별표의 환경국(조경과) 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국 (조 경 과)	1. 가로수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로·시청앞의 가로수 녹지대 설치 및 관리, 노폭 20m이상 도로신설시의 가로수·녹지대 설치는 제외)	○ 도로법 제3조, 제24조	구청장
	2.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설치 및 관리 (서울특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공원법 제11조, 제12조	
	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점용허가	○ 동법 제12조의2	
	다.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원상회복	○ 동법 제9조,제12조의2제4항	
	라. 도시계획시설(녹지)의 매수청구	○ 동법 제12조2제5항	
	마.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점용료징수 및 원인자 부담금	○ 동법 제15조,제16조	
	바. 부담금의 강제징수	○ 동법 제18조	
	3. 세종로, 시청앞의 가로수·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4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4.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수·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4조	건설안전본부장
	5. 수렵면허	○ 조수및수렵에관한법률 제7조	구청장
	6. 보호수의 관리(지정, 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 산림법 제68조 및 제70조	구청장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산업"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시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 발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기업" 이라 함은 시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라 함은 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 및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산업개발진흥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전략산업의 육성 및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산학연 협력체계”라 함은 시, 자치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시 소재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전략산업의 선정·육성·지원, 기업의 지원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전략산업의 선정·육성 및 지원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①시장은 지역혁신발전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산업의 선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이 시에 본사·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해당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마케팅의 지원)시장은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시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시장은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서울기업대상의 시상)①시장은 해당기업으로서 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울기업대상을 시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기업대상을 수상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케팅 또는 기술개발 등 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개발

제11조(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개발)시장은 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12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시장은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등의 완화)①시장은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에 적용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다.

②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개발진흥지구 안의 도시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시세의 감면)시장은 산업개발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적용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다.

제4장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지원

제15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①시장은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산학연 협력체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산학연 협력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1. 기업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제16조(시정발전 협력체계의 구축 등)①시장은 시, 자치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시정발전과 대학교육 발전을 공동목적으로 하여 상호 협력하는 시정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제1항의 시정발전 협력체계의 협력 방법은 상호 협정의 체결로 하고, 협정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개발 및 지역혁신 분야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관계의 구축
2. 지역혁신 전략에 관한 연구·자문
3.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이전의 촉진
4. 산업체에 대한 정보·기술지원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①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8조(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①시장은 산업기술의 개발·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9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①시장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동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20조(산학연 협력사업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시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연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산학연 협력사업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기업민원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21조(기업민원전담기구의 설치·운영)시장은 기업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기업민원의 해결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기업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①복합적이고 주요한 기업민원의 합리적인 조정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시 기업민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업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시계획·건축·세제 등과 관련한 기업의 불편사항
2. 기업동향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3.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행정1부시장
2. 부위원장 : 경영기획실장
3. 당연직 위원 : 감사관, 산업국장 및 해당민원 관계국장
4. 위촉직 위원 : 도시계획·건축·세무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 위원의 정수·임기,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포상금)시장은 기업민원을 해결하여 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민원해결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4조(자금지원의 관리)①이 조례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학교·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지원을 신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업에만 지원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기업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43

2004. 9. 7.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4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년 9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국장 진 익 철)
   가. 민원 불편사항 해소내용
   ○ 환경영향평가 기간의 장기화로 민원인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가서 협의 통보기간을 당초 "4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이고, (안 제11조제1항)
   - 이외에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평가서작성계획서 공람일 20일 삭제, 평가서초안 공람일 30일을 20일로 10일 단축하는 등 총 협의기간 138일을 103일로 35일 단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또한, 동 조례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승인을 받아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이 승인·허가 등의 당시의 규모보다 15%이상 증가한 경우와,
   -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하의 규모로서 15% 미만 증가하더라도 평가대상 규모가 될 때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되,
   ○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경우는 평가대상인데, 건축허가 당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비고)
   나. 운영상 미비점 보완내용
   ○ 위원회의 잦은 심의 및 결정관련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상 30인 이내"에서 "30인 이상 45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안 제17조제1항)
   ○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평가서초안 검토시에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평가서 협의절차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동조례 제17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이의신청, 제도개선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절차 면제여부 결정사항"을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보완하였음.(안 제17조제5항)
   다. 상위법령 개정 반영내용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사업자가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안 제7조제2항)
   ○ 관련법령 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평가서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였음.(안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 종 식)
   ○ 동 개정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2. 9. 1부터 서울특별시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상위법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 직제개편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정하고, 조례상의 대상사업 규모를 보다 명확히 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의 참여를 확